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48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원안, 정부안)	2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48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5. 13.
- (3) 회 부 일 : 2025. 5.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이인선의 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4조) ○ 특례대상 -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운영 비영리법인, 국립서울대학법인 및 발전기금, 국립인천대학법인 및 발전기금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 도서관 운영법인 -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 법인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적용기한 연장 ○ 특례대상: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인구수 30만명 이하인 시·군지역 중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특례내용: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 ○ 적용기한: <u>2025. 12. 31.</u>	○ 특례내용: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정부안)</u> <u>2030. 12. 31.(이인선의원안)</u>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원안, 정부안)

* 이인선의원안 2025. 5. 13. 발의(의안번호 1048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¹⁾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2023년 기준 가동 중인 비영리법인은 56,712개이고 법인세를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42,188개이며, 총 부담세액은 2조 7,595억원임.

[비영리법인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가동법인	45,179	47,924	50,971	53,918	56,712
법인세 신고업체	35,964	37,083	38,958	40,312	42,188
총부담세액	2,106,734	3,163,446	4,029,019	5,111,211	2,759,472

주)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만 법인세를 신고하므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신고법인 수 간 차이가 존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2025. 9.

1)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 현행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²⁾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는 「법인세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 지출을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清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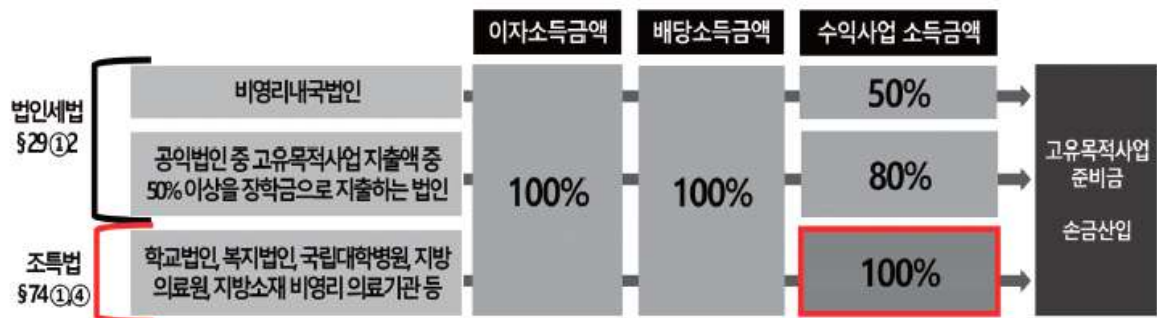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율]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2025. 9.

동 특례는 1976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5항의 ‘사립학교수익사업으로부터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부터 도입되어 그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체에 대한 손금산입이 허용되었고 그 대상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단체 등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전부개정으로 1999년부터 적용기한이 설정된 이후 계속 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동 손금산입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380억원 대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부터 68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법인세	1,538	1,675	1,524	1,094	1,064	68	70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본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동 특례의 적용대상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술협력단 등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수행을 통하여 가치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비영리법인들의 고유목적사업을 장려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음.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은 시장의 영역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역의 가치재 공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동 손금산입특례의 필요성이 인정됨.

둘째, 본 조세특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본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조세감면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생산유발효과 약 1,316억원 수준,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70억원 수준, 취업유발인원은 462명 수준으로 추정되었음.³⁾

3)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심층평가(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2025. 9.

또한, 동 손금산입특례에 따른 고유사업확대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손금산입특례로 인하여 수익사업소득이 1원 증가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0.22원 증가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1원 증가하면 고유목적사업지출은 0.97원 증가하여, 특례 적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소득이 1원 증가하면 고유목적사업지출이 0.21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⁴⁾

- 다만, 적용기한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4)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IV)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016. 9, p.17